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하여 수입신고 오류 최소화
- 업체별 일반현황, 유의 사항, 기타 정보 제공 ... 지난해 수입업체 8,296개사 정보 열람, 납세 오류 정정 금액 285억 원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4,027개사, 202억원 → ('25년) 8,296개사, 285억원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정보제공하여 업체가 점검후 6천만원 수정신고, 5년 누적시 3.5억원 추징 방지
-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과세가격 누락한 오류정보로 점검하여 1억원 수정신고, 향후 6억원 추징 방지
-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하였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7억원 수정신고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 관세안심플랜 : ①품목분류사전심사, ②과세가격사전심사, ③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④환급소요량사전심사, ⑤납세신고도움정보, ⑥성실신고가이드북, ⑦품목분류가이드북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
2. 납세신고도움정보 사진

담당 부서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2-481-7860)
		담당자	사무관	채정균 (042-481-7812)



붙임 1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

- (개요) 수입기업(약 23만개社)의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신고오류 가능성을 유니패스(UNI-PASS)에 공개하여 상시 열람하는 서비스('19.11월 도입)
- (진단방법)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과세자료)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납세신고 오류를 진단
-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를 기업 스스로 열람하는 '자율열람방식'과, 세관이 개별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정보제공방식'으로 구분



□ 정보제공항목

항 목	항목수	정보제공 내역
일반현황	8	수출입 실적·감면·체납 등 현황 자료
납세유의사항	4	과세신고, 품목분류, 환급, 기타 유의사항
기타 자료	7	절세 정보, 법 개정사항, 환급·감면 안내

□ (열람방법) UNI-PASS 접속(로그인) ⇨ 첫화면에서 납세신고도움정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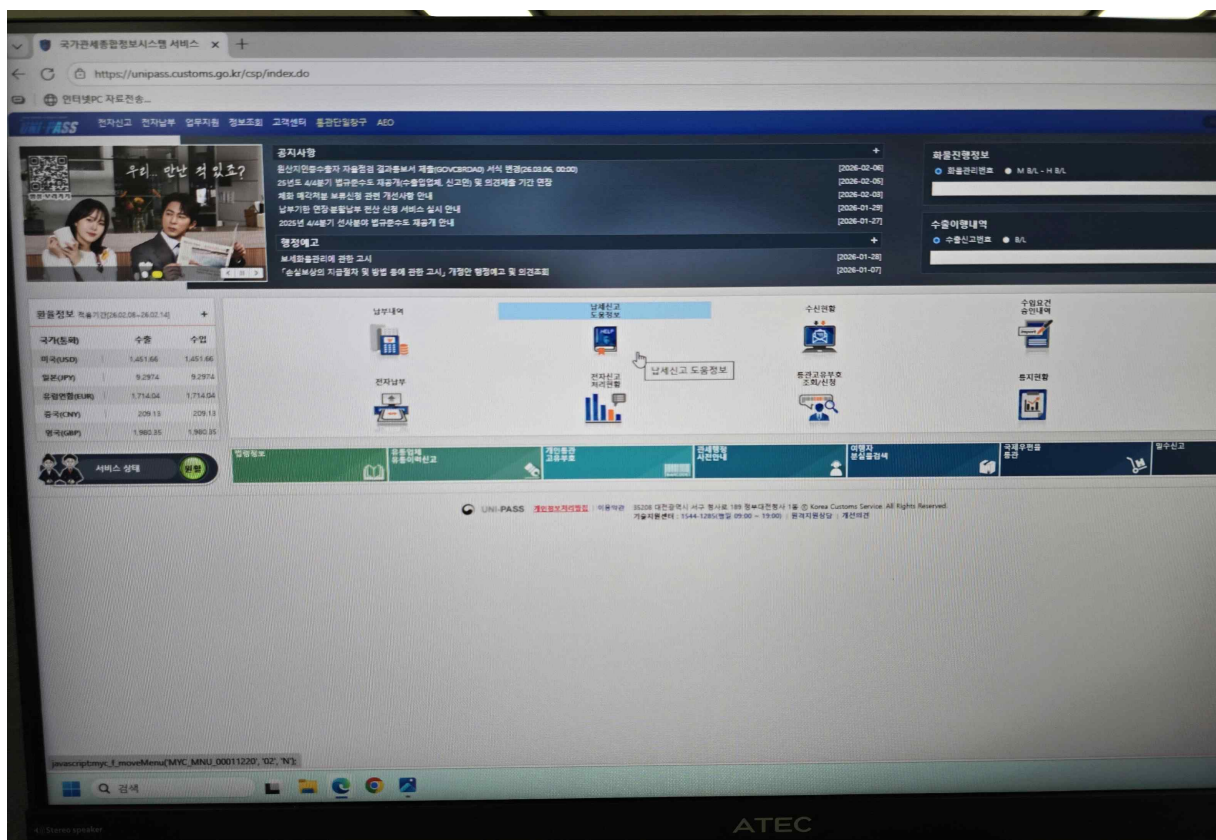




※ 본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본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A

1 '자율열람'과 '개별정보'는 무엇인가요?

- '자율열람'이란 수입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자율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 '개별정보'란 수입자가 납세신고한 사항에 대해 세관이 추가적으로 정보분석한 결과 납세유류가 예상되는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장하여 개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율열람'을 한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수정보정신고를 통해 과소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개별정보'를 받은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유류 점검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시고, 오류정정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정정이란 점검 결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수정보정신고를 통해 과소납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다만,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수정신고(보정신청)는 개별정보 제공 세관에서 알람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오류 점검이나 정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항후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오류 점검이나 정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수입신고 오류정수가 면제 수입신고 정정시 정정사유 코드를 '37'로 입력한 것에 한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입신고 정정 기간별 가산세 감면
- 성실납세와 관련된 포상 대상으로 추천

가산세 ▶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세액의 10%)
 ② 납부지연 가산세(납입 0.022%)

▶ 수정신고(보정신청) 기간별 가산세 감면 비율 ※ 관세법 제38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참조

수정신고(보정신청) 기간	가산세 감면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일자 연도5%가산세 면제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1년 이내	신고불성실 가산세 30% 감경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 경과~1년6개월 이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감경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6개월 경과~2년 이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감경

6 납세신고도움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사 등 업무전문가와 상담 또는 자율열람은 통관지세관, 개별정보는 관할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